

확정급여형 재정검증결과 안내서

DGB Daegu Bank Retirement Pension



2023년 6월 12일
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결과 안내서

DGB대구은행 퇴직연금 / DGB Daegu Bank Retirement Pension

□ 기본정보

회사명	(주)동호-지점	사업자번호	515-85-04790	회사계좌번호	575-10-103246-9
제도명	확정급여형(DB)	조회일자	2023-06-12		

□ 일반현황

제도설정일	납입 주기	법정 최소적립비율			결산년월	가입자 수	30일분 평균임금 합계
		설정전 ¹⁾	설정후 ²⁾	전체 ³⁾			
2012-06-29	연납	100.00%	100.00%	100.00%	2022년12월	5명	19,400,000원

※ 적용명부 : 재정검증용 등록 명부

- 1)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14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,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(연차)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.
- 2)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제도 설정 이후 가입기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.
- 3)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근로기간과 설정 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비용 예상액(이하 "기존책임준비금" 이라 한다)에 대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비율을 말합니다.

$$\text{산출식} = \frac{[(\text{평균과거근로기간} \times \text{고시에 따른 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}) + (\text{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} \times \text{해당 사업연도의 최소적립비율}(90 \text{ 또는 } 100 \text{ 중 어느 하나})]}{\text{가입기간 전체}}$$

□ 납입현황

(해당기간 : 2022.01.01~2022.12.31, 단위 : 원)

부담금 산정액	부담금 납입액	차액 ⁴⁾
217,346,670	239,031	217,107,639

4) 해당 기간에 적립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액과 해당 기간에 납입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액 또는 초과액을 차액으로 표시하였습니다.

□ 기초율⁵⁾ 현황

예상이율	예상임금상승률	예상퇴직률	예상사망률
2.25%	표준승급율	표준퇴직율	표준사망율

5) 기초율은 예상이율, 예상임금상승률, 예상퇴직률, 예상사망률을 말하며,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」(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기준 및 검합통계를 기초로 하였습니다.

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임금상승률 및 퇴직률은 당해 사업장의 경험률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의 발표를 사용이 가능합니다.

1.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(합병 및 분사는 제외)
2.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
3. 과거 통계를 장래 예측을 위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

□ 검증결과

(확인기준일 : 2022.12.31, 단위 : 원)

최소적립금 산출		적립금 평가액 산출	
계속기준 금액 ⁶⁾	221,084,759	원리금보장 ⁹⁾ 평가액	16,571,204
비계속기준 금액 ⁷⁾	198,800,000	실적배당 ¹⁰⁾ 평가액	0
기준책임준비금	221,084,759	평가적립금 합계 ¹¹⁾	16,571,204
최소적립금 ⁸⁾	221,084,759	적립비율 ¹²⁾	7.5

재정검증결과 ¹³⁾	적립부족 II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

- 6)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(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재정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)
- 7)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입니다(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, 가입기간에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).
- 8)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계속기준 금액과 비계속기준 금액 중 더 큰 금액 (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)에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의무적립비율(일반현황의 전체 법정 의무적립비율 값)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.
- 9) 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따른 평가금액입니다.
- 10) 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호에 따라 평가된 금액입니다. 다만,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후단에 따라 평가된 금액이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.

(단위 : 원)

12개월간의 시가평균에 따른 평가금액	사업연도 말 시가에 따른 금액	최종 평가금액
0	0	0

- 11) 원리금보장 운용방식의 평가액과 실적배당 운용방식의 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.
- 12)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평가적립금 합계액의 비율을 말합니다.
- 13) 최소적립금과 평가적립금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과부족 여부를 표시합니다.

□ 조치사항

(단위 : 원)

결과구분	부족비율 ¹⁴⁾	조치사항	참고
적립부족 II	92.50 %p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 대상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정안정화계획서는 3년 이내에 적립금 부족을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, 납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고, 3년간 보존하여야 함 ○ 동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와 당 사업자에 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하며, 재정안정화계획서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성실하게 해소하여야 함 	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 안 내서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보되며, 시행령 제8조제4호에 해당됨. 다음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까지 사외(퇴직연금사업자) 적립금의 범위에서 급여지급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됨

14)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최소적립비율에서 적립비율을 뺀 값을 말합니다.
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2년 12월 기준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급여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재정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(주) 대구은행

(주)동호-지점 대표 귀하